

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개정·시행(2008. 1. 1)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“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”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경남도의 조례 표준안(2008.9.5)에는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3조(구성) 2항에는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, 참고로 고성군의 교통사고 현황 및 감소목표치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.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상위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는데 조례개정 시기가 지연된 이유는?
- 답 : 2년마다 교통안전 추진체계 정비를 하는데 거기다가 맞추다 보니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
- 문 : 경찰서에 유사한 명칭의 위원회가 있는데, 그 차이는?
- 답 :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시설물, 신호등, 횡단보도 등을 심의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,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